

수입선박 국내 최초입항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 받아야 수입신고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시 밀수입죄로 처벌

신규 화물운송사업자는 여러 형태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 수입하는 선박, 즉 중고리스, 국내신조 BBCHP, 국외건조 BBCHP, 중고선이 국내외 신조 또는 중고 BBCHP(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인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수입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 관세 무세적용으로 수입신고 소홀

수입선박은 어느 형태를 불문하고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해당되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선박, 항공기) 우리나라에 최초입항한때에 수입신고를 하여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 따라 관세법 별표 세율에 의거, 제89류(선박과수상구조물) 8901(화물선, 여객선, 순항선) 무세, 8902(어선) 무세, 8903(요트 및 유람선) 8%,

8904(예인선) 5%, 8905(소방선 및 준설선) 5% 등 의 관세를 납부하거나 무세를 적용받는다.

1997년 이전에는 BBCHP 선박확보 지침이 있어 BBCHP 금융한도(10억달러 범위)내 실수요자 선정이 되어야 선박확보가 이루어져 선가의 2.5%를 관세로 납부함에 따라 수입신고를 철저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부터 관세가 철폐된 이후 수입신고를 느슨하게 하는 해운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수입선박에 대한 관세가 무세적용됨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확보 절차는 한국선주협회의 실수요자 추천,

〈 BBCHP 선박확보 신고관련부처 〉

신고내용	관련규정	부처	용도	수입신고 필증제출	비고
임대차계약신고	외환관리법 제18조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외환관리	없음	3천만불 이상 한국은행신고
사업계획신고 국제선박등록 제주특구등록	해운법 제12조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제주특별법 제47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해운업관리 국제선박관리 제주등록	없음 없음 없음	임대차계약서제출 국제선박등록증제출
선박입출항허가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	세관	운수기관의 감시	없음	
선박등기	대법원등기예규 제1106호	법원	등기	있음	BBCHP계약종료 등기당시

(자료) 한국선주협회

국토해양부의 선정, 한국은행 신고 등을 거쳐서 관계부처의 수입신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된 이후,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선박금융을하게 되었고, 수입신고도 관계기관의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선가상환 후 수입신고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BBCHP 선박을 다른 선사나 외국 선사에 대선해 줄 경우 삼국간 항로만 운항하다 부득이 국내에 입항해도 국내선주가 입항사실을 모르고 수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수입선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특히, 「수입신고 필증」은 선가상환 종료 후 선박 등기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초기 선박운항 시점에서는 단순히 수입신고 하는 것에 그치지만, 잘 보관했다가 선박 등기시 첨부서류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관세법 제14조)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세금보다 우선징수(관세법 제3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율(관세법 제49조)은 크게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로 구분하고 별표 관세율표(제50조)의 의해 관세를 부과한다.

선박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에 8901(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과 8902(여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 선박)에 “무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무세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행위 무신고 수입(밀수입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선박몰수 및 추징 등 양벌적용을

받게 되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BBC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도 신조선이나 중고선을 확보하여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BBCHP는 국내선사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한 국내 귀속자산이며, 수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입신고 시기는 국내 최초입항 시점이 수입시점, 즉 물품이동(관세영역)으로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경우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은 조선소가 수출하므로 국내 영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항해야 하는 것을 수출상태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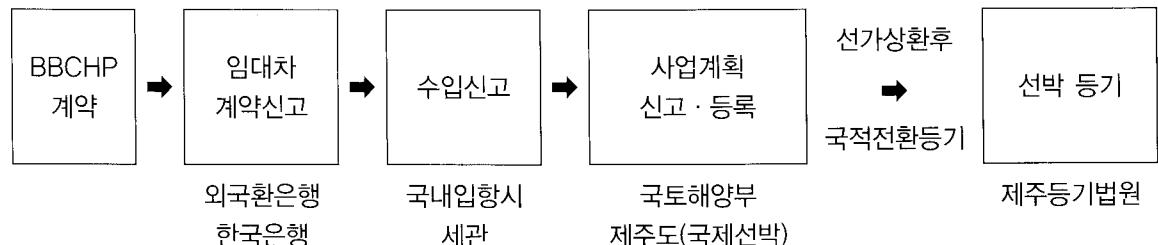
▶ BBCHP 선박도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BBCHP 선박은 외국적선(편의치적)인데 국내항입항시 수입통관을 꼭 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선박도입관세(2.5%)가 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수입관세가 무세적용 되는데 수입신고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 국적취득조건부로 선가상환 후 최초 입항시에 입항신고서를 선박 등기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한, BBCHP는 외국선주로부터 나용선 계약한 용선자(국내인)가 외국환은행(한국은행)에 임대차 신고하여 국제리스 형식으로 금융상환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럼 어느 시기에 수입통관을 하면 되는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을 국내로 가



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관세법에서는 BBCHP 선박을 수입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고, 판례도 있다.

따라서 BBCHP 선박은 수입대상이 분명하고 반드시 수입통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수입(고의적 사실로 확인)으로 밀수입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선박의 몰수·추징과 담당자 및 법인도 처벌 받는다.

▶ 수입의 정의

(1) 관세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의 정의

BBCHP선박이 관세법상 수입대상인지 관련규정을 먼저 알아야 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물품”이라 함은,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물품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수입의 정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수입의 정의를 보면,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 2(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③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 3(전

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밖에 산업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의치적선의 수입대상 여부

편의치적선(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의 경우 그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4-6-1조의 따르면 편의치적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아 선박법제2조에 의한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취득한 선박은 관세법에 의한 수입 대상이다.

선박법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국제기구 등에서 수입의 정의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기구) 국제관세용어집에는 “수입”이란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거나 가져오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작성지침 제14절에는 “수입”이란 “일국의 경제영역으로 반입됨으로써 그 나라의 물적 자원 총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상품의 이동하는 것. 다만, 단순히 한나라를 통과하는 것이나 일시적 반입되는 것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다.

▶ 수입신고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1) 수입신고대상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수입신고 대상여부(재무부 관세제도 1242~371, 79. 6. 8)에 대한 답변요지를 보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하였을 때 동 선박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비록 소유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2) 수입대상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국 선박이 경락된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요건에 대하여 “선박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수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 국적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위 선박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96누10522, 1997. 10. 10 판결)

(3) BBCHP선박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대법원 1983. 10. 11선고 82누 328판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0도354, 2000. 5. 12, 대법원 2003도8014, 2004. 3. 26)

▶ 관세법 등에서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등과 같은 과세표준 및 과세요건 사실을 판정하면서 형식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그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세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BBCHP나 BBC선박 또는 다른 형태의 소유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국인 소유라면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가 있다.

▶ 단순나용선(임차선박)의 국내 입항하는 경우

단순나용선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내 입항 시에만 운수기관으로 운수기관의 입항신고 및 출항 허가(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를 받아야 한다. 단순나용선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선박·항공기)에 의하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간용선의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경우 당해선박이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에 해당되는 외국과의 무역에 관련된 용도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운수기관」으로 처리하여 외국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법상 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부 관세제도 1242~371, 79. 6. 8)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단순나용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97도795, 1997. 9. 9)

한편,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세청은 “단순나용선(기), 기간용선(기), 항차용선(기) 등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회항되어 왔을 때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가 관세법상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될 경우(원양어선을 포함)에는 이를 수입외국물품으로 볼 수 없고 운수기관으로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당해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각 항간에서의 물품(인원)수송에 반복적으로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도1242-1712, 79.6.8)

▶ BBCHP선박의 수입신고 시기

일반물품의 수입시기는 국내반입일 또는 장차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한다. 선박의 수입신고는 선박운용방법의 특성상 일반물품 신고시기와 달리 국내로 수입하여 내항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기 전 항구에 정박하였을 때 수입신고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외국적 선박(BBCHP 포함)의 경우 선박을 등기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조선소)에서 반출할 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 매각물품의 경우는 수출신고(반송신고에 준함)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신고한다. 그리고 외국 항행 중 인수받은 선박이나 중고선은 최초 입항시 신고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와 제269조, 제271조 및 제274조에는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2항,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 2004. 10. 5)

또한,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2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 담당자의 단순오류 및 착오도 밀수입죄 성립

현행 형법 제13조 [범의]라 함은 죄의 성립요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단,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인식의 고의를 지칭한다.

또한 휴대품, 이사화물, 선용품, 우편물 등 인지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관세가 있는 것이나, 무세품이거나 관련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수입죄(밀수입죄)가 적용된다.

BBCHP의 형식적인 소유권이 외국적인데 BBCHP선박이 국내입항신고 하고 출항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최초 입항시에 담당자의 단순오류 및 착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 될 수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방법의 오류 또는 신고누락으로 신고의 효력이 수입물품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밀수입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관세법 기본통칙269-0...1(소유권 미취득 외국적 선박의 반입시 밀수입죄 등 해당여부)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

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나라 항구와 공해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선박이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3도8014, 2004. 3. 26)

▶ 밀수입죄와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계

선박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거「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포함)을 외국 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000만달러 이상 일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8조에 해당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한, 동 법 제31조에 의거 해당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2월에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입(수출입죄)과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 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 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 그 수출입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 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이나 그 기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5도6484, 2005. 12. 23)

기타 금속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 절차),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판결)

▶ 수입 미신고한 BBCHP선박도 몰수가능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고 있는데 몰수·추징 대상 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밀수입죄가 적용되면 관세법 제282조에 의거 몰수 또는 추징당할 수 있다.

밀수입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관세법 제319조)하게 되며,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자와 범인도 처벌(관세법 제280조)하는 양벌적용을 반계됨은 물론, 밀수입죄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한다.

▶ 몰수품 처분과 관세법의 조사

관세법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에 의하면, 세관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관세법 제290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관세법이 있다고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 제291조(신문)에 따라 신문과 제292조(조서작성)에 의거,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최근 수입미신고(밀수입)에 대한 관세청 수사 및 검찰 처벌사례를 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세관은 2007년 5월 10일부터 제주등록특구에 등록된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세관전산망을 통해 6개선사의 선박 15척(수입금액 3,350억원)을 조사한 뒤 서울본부세관으로 이관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정밀 조사 후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선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한국선주협회가 진정서를 내고 선처를 요망했으며,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은 수입신고 철저홍보 등을 전제로 진정서를 수용하여 2008년 3월 기소유예 처분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 선박의 수입신고 절차

선박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화물 통관절차와는 많이 다르다. 입출항 스케줄 내에 수입통관이 끝나야 한다는 점, 통상 화물선 등에 대한 관세가 무세인 점, 선박에 공급 적재되어 있는 잔량유류에 대한 SURVEY 실시 및 과세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선박수입 통관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계약서(가격과 조건 및 선박명세가 표현되어 있어야 함), INVENTORY LIST, 통신장비 리스트, 기타 선박설비 등에 대한 명세, 최근 직전 급유 INVOICE(주유 INVOICE가 없는 경우는 동종 유류에 대한 주유시 단가표가 있어야 함), 타소장치 허가서(관세법상 타소장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해상운송사업 등록증(국토해양부), SURVEYOR'S REPORT, 자격변경시 필요서류, 자격변경신청서(선장이 작

성), 승무원명부(선장이 작성), 승무원 휴대품 목록(선장이 작성), 선용품목록(선장이 작성), 잔존유류 확인서(선장이 작성), 검사보고서(세관검사 담당자가 작성),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항선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등 해양수산부 발행서류), SURVEYOR'S REPORT(잔량유류 확인, 이 서류로 인해 검사 생략할 수도 있음) 등이다.

특히,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입출항 스케줄 확인 : 선박은 국내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 등 업무가 하역 완료시점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능 시간을 정확히 하기 위해 입출항 스케줄 및 하역 완료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타소장치 혀가 :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은 보세구역이고 외국무역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는 항구는 개항에 한한다. 따라서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거나 개항이더라도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외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로 통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타소장치 혀가를 득 하여야 한다. 타소장치 혀가신청은 관할세관에 할 수 있다. 타소장치라는 말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외의 곳에 장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 ③ SURVEY 실시 : 관세법상 화물선은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선박에 급유 적재 되어 있는 연료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그 잔량에 대하여 관세, 특소세, 교통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전문 유류 검정인(SURVEYOR)에게 잔량 유류를 검정을 의뢰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④ 수입신고 : 필수구비서류가 구비되고 잔량유류 검정이 완료되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선박수입통

관 시에는 유류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과 세율을 다음과 같다.

○ FUEL OIL(FO) : BUNKER C 등

- 관 세 : 기본세율5%
- 부가세 : 10%
- 특소세 : 17%
- 교육세 : 특소세액의 15%

○ DIESEL OIL(DO)

- 관 세 : 기본세율5%
- 부가세 : 10%
- 교통.에너지.환경세 : 358원/l
- 교육세 : 교통세액의 15%

○ LUBRICATING OIL(LO) : 용도 및 제조사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름

- 관 세 : 기본세율 7%
- 부가세 : 10%

⑤ 하역완료 :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완료된 후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 및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⑥ 자격전환 승인신청 : 선박을 수입통관 한 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격을 관세법상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전환 승인신청은 관할세관에 신청을 하고 신청시 잔량 유류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때 검사된 수량만큼 추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⑦ 관세 등 환급 신청 : 상기의 절차를 완료한 뒤 선박이 외국무역선이 되어 출항 한 뒤에는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환급액은 최초 수입신고시 잔량유류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의 범위 내에서 출항전 잔량 유류 만큼에 상당하는 세액이다. 환급신청은 관할 세관에 할 수 있다.